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73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1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23. 6. 15.)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대표발의자 박다미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 지역협의체 구성 및 기능 등(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및 시행규칙(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추진(2023.6.2.~6.12.)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률들을 근거로 영유아, 초등학생,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복지시설 아동들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의료지원비 신청) 중 제1항은 의료지원비를 본 사업 참여 치과의원 등이 오프라인 별지 신청서 작성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제2항의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Denti-i)’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나, 조례 구성상 기본적으로는 공식 서식을 원칙으로 규정하여야 하기에 온/오프 이원화로 기술한 것임.
- 안 제7조(재정지원 등)은 제2항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신청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제3항에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사항을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관련 조례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음. 강남구 보조금 관련 조례는 제30조에 이의신청 규정을 두고 있고, 교부절차 및 제재 규정 등도 반영하고 있음
- 안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에는 본 협의체가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항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용 관련 사항은 강남구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음.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의약과에서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관내 초등학생 1,318명과 18세 미만 복지시설 등 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연간) 73,264천원의 예산액을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당초 보다 39,264천원을 증액요구하는 것이며, 이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매칭한 것 외에 구비 자체재원을 추가반영한 것이며, 의료비 1인당 지원 단가는 48천원 수준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어린이 구강 건강을 위해 현실 적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관내 다수 치과 의원 또는 병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 방안 마련을 지역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박다미·안지연·노애자·복진  
경·김형대·이동호·강을석·  
김진경·이성수·김현정·이도  
희·한운수·전인수·오은누  
리·손민기·김형곤·우종혁·  
김민경 의원(이상18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안 제5조부터 제7조)
- 라. 지역협의체 구성 및 기능 등(안 제8조 및 제9조)

마. 비밀누설금지 및 시행규칙(안 제10조 및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구강보건법」 등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의료지원비”이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계획에 따른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건강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

문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 사항 심의
2. 지역 아동 구강보건 지원 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
3. 학교,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의료 및 학부모 등의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아동 구강보건 의료지원비 청구서(제6조 관련)

본 의료기관(의원)에서 20 . . ~ 20 . . 까지 치료한 아동 구강건강 지원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의료기관 주소(전화번호) :

치료 대상자		치료내역	청구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합 계				
의료지원비 지급계좌	( ) 은행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20 . .

( )병원(의원)장 (인)

## 【관계법령】

### □ 구강보건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 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